

제72회 교수 초빙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2024. 3.

전 남 대 학 교
교무처 교무과

차 례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1. 목적	1
2. 기본지침	1
가. 임용직급	1
나. 지원자격	1
다. 온라인 접수	2
라. 제출서류	3
마. 연구(실기)실적물 인정기준	6
바.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 제한	7
사. 채용분야 배정 및 임용예정 제도	7
3. 공채관련 각종 위원회	7
가. 기초심사위원회	7
나. 전공심사위원회 I	8
다. 전공심사위원회 II	9
라. 면접심사위원회	10
마. 공채공정관리위원회	10
바.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	11
사. 기타	11
4. 심사기준 및 평정방법	12
가. 심사 배점기준	12
나. 기초심사	12
다. 전공심사	12

차 례

1) 전공 1단계 심사(연구(실기) 우수성 심사)	12
가) 전공적부 심사	13
나)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심사	13
다) 연구(실기)실적 양적 심사	14
라) 연구(실기)실적 질적 심사	15
※ 연구(실기)실적물 인정	17
2) 전공 2단계 심사(교육 우수성 심사)	25
가) 심사 방법 및 절차(공통사항)	25
나) 공개수업 심사	25
다) 교육·연구개발역량(또는 실기) 심사	26
라. 면접심사	26
5. 합격자 사정	27
가. 기초심사 사정	27
나. 전공심사 사정	27
다. 최종합격자 사정	29
6. 공개채용 심사 결과의 공개	29
7. 심사 및 채용의 제한	29
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불공정 행위	29
나. 심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30
다. 불공정 판정과 채용의 제한	30
8. 기타 사항	31

차 례

각종 심사서 서식 등

1. 기초심사서<서식1>	32
2. 전공적부 심사서<서식2>	33
3.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심사서<서식3>	34
4. 최종학위 우수성 심사서(예능분야)<서식3-1>	35
5. 연구실적 등급 및 인정률 심사서<서식4-1>	36
6. 법조경력 등급 및 인정률 심사서<서식4-2>	37
7. 실기실적 인정률 심사서<서식4-3>	38
8. 연구실적 분야일치 및 중복 심사서<서식4-4>	39
9. 법조경력 분야일치 심사서<서식4-5>	40
10. 실기실적 분야일치 및 중복 심사서<서식4-6>	41
11. 연구실적 질적 심사서<서식5-1>	42
12. 법조실무경력 질적 심사서<서식5-2>	43
13. 실기실적 질적 심사서<서식5-3>	44
14. 공개수업 심사서<서식6>	45
15. 교육·연구개발역량 심사서<서식7>	46
16. 면접 심사서<서식8>	47
17. 공정성에 대한 의견서<서식9>	48
18. 응모원서(일반공개채용)	49
19. 학위논문 목록<별첨 서식1>	50
20. 교육·연구·법조활동 경력 목록<별첨 서식2>	51
21. 국제규모 연구실적 목록<별첨 서식3-1>	52
22. 전국규모 연구실적 목록<별첨 서식3-2>	53
23. 실기실적 목록<별첨 서식3-3>	54
24. 연구실적 응모자 평가표<별첨 서식4>	55
25. 법조실무경력 조서<별첨 서식5>	56
26. 법조실무경력 지원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별첨 서식6>	57

제72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안)

1. 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 공개채용 전형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용기준을 객관화하고 임용절차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지침

가. 임용 직급

공개채용에 의한 전임교원의 임용직급은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직급)에 따른다.

나. 지원 자격

-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 연구실적 년수와 교육경력 년수를 합하여 4년 이상(석·박사 과정 포함)
 - 석박사 경력은 실제 수학기간*만 인정하며,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 * 실제 수학기간은 성적증명서로 등록 여부 확인(휴학기간, 0학점, 수료 후 학기는 미인정)
- 3) 실무경력 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의과대학 임상분야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 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수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
 - 다) 예능계 실기분야(문화전문대학원 실무분야 포함)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 라) 약학대학 임상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약무박사(Pharm. D.) 자격을 소지한 자

- 마)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실무가) 분야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법조실무경력(판사, 검사, 변호사)이 5년 이상인 자
 - 바) 공과대학·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사)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분야와 관련된 산업체(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소지자는 산업체 경력이 8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인자
- ※ 지원자격 2) 및 3)의 경력 산정은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별표1-2] 신규채용 교원 연구실적 연수 환산율 산출 기준을 따르며,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다. 온라인 접수

- 1) 홈페이지 주소(교원공채시스템): <https://hangj.jnu.ac.kr/ICIW>
- 2) 공고기간: 2024. 03. 28.(목) ~ 2024. 04. 12.(금)
- 3) 접수기간: 2024. 04. 01.(월) 09:00 ~ 2024. 04. 12.(금) 18:00(한국시간 기준)
 - 가) 2개 이상의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접수를 무효로 한다.
 - 나) 해당 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업로드)하여야 함. 허위·착오·누락(학력, 경력, 연구(실기)실적물 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모자의 책임이며,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 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 지원서 제출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4) 연구(실기)실적물 제출 기준
 - 가) 2021. 3. 1.~ 2024. 3. 31. 기간에 발표된 연구(실기) 실적물 각 1부
 - 나) 연구(실기)실적물 10편 이내
 - 다) 연구(실기)실적물 질적 심사를 위해 제출한 실적물 가운데 2편을 대표 실적물로 지정해야 한다.
 - ☞ 저자의 출신국가가 대한민국인 경우 저자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
 - 라) 대표실적물은 응모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만 인정한다.
 - ※ 대표실적물로 특허 불인정

- 공과대학 건축설계 분야의 대표실적물은 응모자가 실기실적 주저자(제1저자)인 경우만 인정
- 공과대학 건축계획 분야는 설계창작활동 실적(공모전)을 연구실적에 포함 가능하나 대표 실적물로는 지정할 수 없음.
-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의 대표실적물은 설계창작 활동(전문지발표/설계 경기·수상/전시·발표/계획·완공)인 경우만 인정. 다만,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의 설계창작활동 실적은 주저자 구분을 하지 않으며, 주저자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실적물(질적심사 대상)로 지정 가능함.

5) 교원 공채시스템 입력 사항

- 응모원서 1부(채용 학과(부) 및 초빙분야, 기본신상, 학력사항 등)
-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목록 1부
- 교육 및 연구·법조활동 경력 목록 1부
- 국제규모 및 전국규모 연구실적 목록 각 1부
- 실기실적 목록(예체능 실기분야 및 건축설계 분야만 해당) 각 1부
- 연구실적 응모자 평가표 1부(예체능 실기분야는 제외)

라.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온라인 업로드(원본 서류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

※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임.

1) 자기소개서, 교육계획서, 연구계획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교육계획서(강의담당 가능과목과 중·단기 교육계획), 연구계획서(중단기 연구계획)를 A4용지 각 3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자유서식)

2) 학위(졸업) 및 성적 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부

- 외국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1부 ☞ 국문 번역문(본인서명 명기) 첨부
-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종합시스템에 신고 후 확인 가능한 신고내역(입학일, 체류기간, 수업방법(전일제 수업(Full-Time) 여부 등 명기) 1부 첨부
- 성적증명서가 없는 대학(원)일 경우 실제 수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교육비납입증명서(실제 수학기간 확인용) 추가 제출
- 석사 및 박사 과정 수료자는 수료증명서(연구실적 산출용) 첨부

3)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응모자가 「교육 및 연구·법조활동 경력 목록」에 입력한 전체 경력에 대한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는 임용 후 보수 연봉제 산출근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별 근무기간, 정규직 여부, 상근여부, 유급여부 등 가능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강사 및 기타 비상근 비전임교원(겸임/초빙/외래/강의전담교수 등)의 경우 반드시 학기별 시수가 표기된 증명서로 제출함.
 - ☞ 비전임교원은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상근으로 인정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경력 종료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함.
 - ☞ 계약서, OFFER, 연구과제 참여확인서는 불인정, 경력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명기
- 재직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함.
 - ☞ 임용 후 경력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는 국문 번역문(본인서명 명기) 첨부

4) 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 초빙분야별 최소자격요건에 명시된 관련 자격증 1부
- 의과대학 임상분야는 전문의 자격증 1부
-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분야는 수련의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1부
- 공과대학·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는 건축사 자격증 1부
-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실무경력 분야는 아래 서류 각 1부
 - 변호사 시험 합격증서 1부(실제 취득일 확인 가능 증명 서류)
 - 법조실무경력 조서 1부(별첨 서식 5)
 - 법조실무경력 지원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 1부(별첨 서식 6)

5) 연구(실기)실적물 각 1부

가) 최종 학위논문 1부

- ※ 외국어로 출간된 학위논문은 추가로 학위논문 요약자료의 국문 번역문(국문 초록)을 응모자가 날인하여 첨부
- ※ 예체능 분야 중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학위논문 대체 실적물(PDF파일) 첨부
- ※ 법조실무경력 분야는 학위논문 대신에 지원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PDF파일) 첨부

나) 2021. 3. 1.~ 2024. 3. 31. 기간에 발표된 연구(실기)실적물 각 1부

- (1) 학술논문 각 1부(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전문 업로드)
- (2) 학술논문 발표 사실 확인 자료 각 1부(학술논문 1편당 각 1부)
 - Web of Science 또는 KCI에서 제공하는 연구실적물별 세부정보 페이지를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발표연월, 논문 제목, 권(호), 페이지 범위, Article NO., 국제표준정기간행물번호(ISSN), 저자명, 교신저자 등)

※ Web of Science 또는 KCI에서 세부정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학술지 표지, 목차 또는 온라인 논문 검색결과 출력물 등에 게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제1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 후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

(3) 특허 공고전문 각 1부(요약,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설명 등이 포함된 공고전문 PDF파일 업로드)

- 등록이 완료된 특허만 제출 가능하며, 공고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s://www.kipris.or.kr>)에서 출력 가능

(4) 실기실적물(예능 및 건축설계) 및 발표사실 확인자료 각 1부

- 예능계열 실기실적: 공연, 발표(전시)회, 공모전 등 팸플릿 PDF파일 업로드

- 예능계열 발표사실 확인자료: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공연(전시)장(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대관계약서 등 PDF파일 업로드

※ 음악분야는 대표실적물로 지정된 실기실적물에 대한 영상녹화자료(USB, DVD 등 증빙자료)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과대학 건축설계 분야(건축계획 분야 포함) 설계창작활동 실적: 주관기관이나 공인된 단체(대한건축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 또는 확인서(지원자 실적 표시) PDF파일 업로드(해외 실적은 해당 국가의 실적 확인 방식에 따른 서류 제출 가능, 외국어 서류의 경우 국문 번역본 첨부)

- 공과대학 건축설계 분야(건축계획 분야 포함) 설계창작활동 확인자료: 실적 등급 증빙자료(공고문 등) 및 포트폴리오(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상관없음, 대표실적물은 표시 요망) PDF 파일 업로드(건축계획 분야는 설계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트폴리오 제출)

-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실적: 설계창작활동 실적 증명서 원본 혹은 확인서 PDF 파일 업로드

-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실적 확인자료: 설계창작활동 증빙 서류 및 포트폴리오(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상관없음, 대표실적물은 표시 요망) PDF파일 업로드

※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실적 인정범위 및 제출서류(pp.20~21 참조)

6)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전공심사 합격자 인성검사

- 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합격 또는 불합격 기준으로는 미활용)

마. 연구(실기)실적물 인정기준

1) 2021. 3. 1.~ 2024. 3. 31. 기간에 발표된 연구(실기)실적(학술논문, 특허, 예능 분야의 실기실적 및 건축설계 분야의 설계창작활동실적)을 심사대상으로 인정한다.

※ 학술논문은 권(호), 페이지, 발행월(일), 연도가 부여되어 출판 완료된 실적물만 인정

2) 학술논문은 3대 과학저널, 국제규모 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한다.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출판되지 않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논문, 초록, 서적에 실린 논문(Book Chapter), 학술서적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권(Volume), 호(Issue), 수록면(Page), Article NO. 가 확인되지 않는 게재 예정 연구실적물 (DOI만 부여, online accepted, available online, in press, on press, Epub ahead of print, Early access, Early view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인쇄물과 Web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은 인쇄물 출판일자를 기준으로 함.

3) 학술논문 등급 적용 시점은 게재한 학술지가 출판된 시점의 등급을 적용하되, S급 국제학술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JCR(Journal Citation Report) DB 기준 학문분야별 상위 10% 학술지로 한정한다.

4) 특허는 연구에 의한 발명특허를 인정하고, 연구실적 인정기간 내 특허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5) 예체능 분야의 실기실적물은 전시, 수상 등이 완료된 시점의 등급을 적용한다(예체능 분야의 동일 작품의 전시회 및 동일 프로그램의 연주회는 장소, 일시의 다름에 불문하고 1회에 한하여 인정).

6)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실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총 법조실무경력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7) 공과대학 건축설계 및 건축계획 분야의 공모전 입상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도시 설계경기(당선작 또는 1등은 실시설계권을 부여한 경우에만 한함)의 입상작에 한한다.

- 8)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실적의 인정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설계창작활동이 아닌 논문 등의 연구실적은 일반분야의 평정방법에 따른다.

바.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 제한

-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을 적용한다.
- 2) 모집단위는 신입생 모집단위를 의미한다.
-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의 누적 채용인원의 통산 기산은 개정 시점인 2009. 1. 16.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2.>

1. 해당 대학교원이 취득한 학사학위의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 분야와 다른 경우
2. 해당 대학교원이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원자격으로 하여 채용되는 경우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1. 16.>

사. 초빙분야 배정 및 임용예정 제도

- 1) 초빙분야는 전임교원의 정원 이내에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위 1)에도 불구하고 초과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임용우선순위를 정하며, 그 순위에 따라 임용될 수 있다.
- 3) 해당분야의 합격자가 당해 공채에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회 공채 또는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임용한다.

3. 공채관련 각종 위원회

공개채용 전형관리를 위한 업무분야별 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심사위원회

- 1) 구성: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연구부처장, 교무과장, 인사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는다.

2) 담당업무

- 가)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의 전반적인 행정관리
- 나) 구비서류 검토
- 다) 응모자의 연구실적 등급과 인정여부(출판 여부) 등을 해당 학과(부)와 사전 교차 검토
- 라) 응모자격 심사: 법정자격, 학력 등

나. 전공심사위원회 I (연구 우수성 심사)

- 1) 구성: 전공심사위원회 I 은 해당 기관(학과(부) 등) 또는 관련전공(유사전공 포함) 교원(이하 ‘학내심사위원’ 이라 한다) 3명과 관련 전공 학외인사(이하 ‘학외심사위원’ 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 다음의 경우 학내심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학과(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에 적합한 교원이 없는 경우
 - 학과(부) 등의 교수회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자격 기준: 응모자의 석사·박사 지도교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심사 대상 연구(실기)실적물의 공저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전공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내심사위원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국제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전문학술저서, 번역서, 발명특허에 대한 「전남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상의 연구업적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어야 하나, 학과(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외심사위원은 연구업적평가점수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위원장: 전공심사위원회 I 의 위원장은 학과(부)장이 맡는다. 학과(부)장에게 학내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이 학과(부)의 전공주임 또는 전임교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과(부)장이 없으면 전문대학원장이 위원장을 정하고, 대학(원) 이외의 채용분야는 해당기관장이 맡는다.
- 4) 심사위원 임명(위촉) 절차

가) **대학(원)**: 학내심사위원회는 채용분야별로 학과(부) 등의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부)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임명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학외심사위원회는 학과(부)장이 선정한 5배수 이상을 대학(원)장이 대학(원) 공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그 중 2~5명을 위촉한다.

나) **대학(원) 이외의 채용분야 해당기관**: 해당기관 자체회의를 거쳐 학내 심사위원회는 채용분야 관련전공 전임교원 3명을 해당기관장이 임명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학외심사위원회는 해당기관장이 채용분야별로 5배수 이상을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그 중 2~5명을 위촉한다.

5) 담당업무

가) 전공적부 심사

나)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심사

다) 연구(실기)실적물 양적 심사

라) 연구(실기)실적물 질적 심사(대표실적물 우수성 심사)

6) 학외심사위원회에 대한 경비 지급

학외심사위원회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수당 및 교통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따로 정한다.

다. 전공심사위원회 II(교육 우수성 심사)

1) 구성

가) **대학(원)**: 해당 채용분야의 대학(원)장, 전공심사위원회 I의 학내심사위원 3명, 학과(부) 등의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임명한 해당학과(부) 또는 관련전공(유사전공 포함) 전임교원 2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나) **대학(원) 이외의 채용분야 해당기관**: 기관장, 전공심사위원회 I의 학내심사위원 3명, 해당기관 자체회의를 거쳐 해당 기관장이 임명한 채용분야 관련전공(유사전공 포함) 전임교원 2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 다음의 경우 학내심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공심사위원회 I의 학과(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 받은 학외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음.

- 학과(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에 적합한 교원이 없는 경우
- 학과(부) 등의 교수회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격 기준:** 응모자의 석사박사 지도교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심사대상 연구(실기)실적물의 공저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전공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전공심사위원회 II 심사위원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제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전문학술저서, 번역서, 발명특허에 대한 「전남대학교교수업적평가 규정」상의 연구업적평가 점수의 합이 100점 이상이어야 하나, 학과(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원)장과 공개수업 심사에만 참여하는 학과(부) 전임교원 또는 학외심사위원은 연구업적평가점수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위원장:** 전공심사위원회 I의 위원장이 맡는다.

4) 공개수업 심사는 위 1)의 심사위원 외에 해당 기관장이 임명하는 해당 기관(학과(부) 등) 전임교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담당업무

- 가) 공개수업 심사
- 나) 교육·연구개발역량 심사

라. 면접심사위원회

1) **구성:** 총장, 부총장(교학, 연구, 여수), 교무처장, 해당 학(원)장 및 해당 학과장 (학부는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 기금교수의 경우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 교수평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맡는다.

※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과(부)장이 없으면 전공심사위원장으로 함.

※ 학과(부)장이 없는 대학(원) 이외의 채용분야 해당기관의 경우 총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으로 함.

2) **담당업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위한 면접심사로 응모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인성, 품성, 학생지도 능력과 리더십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마. 공채공정관리위원회

1) 구성: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총장이 임명한 2명,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맡는다.

2) 담당업무

가) 공채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원)의 공채관리위원회의 업무

나)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의

다)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정성 심의

※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종결 또는 재심사 여부를 심의함

라) 기타 총장이 요청한 사항

바.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

1) 구성

가) 대학(원): 학(원)장, 부학(원)장, 소속 전임교원 3~5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전공심사위원회 I·II의 학내심사위원은 제외)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맡는다. 다만, 부학(원)장이 학과(부)장을 겸하거나 학과(부)가 없는 대학(원)은 대학(원) 공채관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본부에 설치된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동 업무를 수행한다.

나) 대학(원) 이외의 채용분야 해당기관: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동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업무

가) 해당 대학(원) 전임교원 공개채용 과정 관리

나) 학외 전공심사위원 추천 대상자 사전 심의

다) 학과(부) 등의 세부심사기준 심의

라) 전공심사에 대한 공정성 심의 및 조치

마) 기타 공채 관련사항 심의

사. 기타

1) 신설 예정학과의 심사위원회 구성

가) 전공심사위원회 I: 소속 예정 대학(원)의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관련 전공 교원 학내심사위원의 5배수 추천과 관련 전공 학외심사위원의 5배수 추천을 받아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심사위원장 및

전공심사위원을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 필요한 경우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추가 추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공심사위원회 II**: 소속 예정 채용분야의 대학(원)장, 전공심사위원회 I의 학내심사위원 3명, 소속 예정 대학(원)의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기 추천한 학내심사위원 중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하는 전공심사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 전공심사(연구 및 교육 우수성 심사)는 소속 예정 대학(원)의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함.

다) **면접심사위원회**: 총장, 부총장(교학, 연구, 여수), 교무처장, 소속 예정 대학(원)의 해당 학(원)장, 전공심사위원장, 교수평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이 맡는다.

2) 학외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가) 구성: 교무부처장(위원장), 연구부처장,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1명, 인사팀장으로 구성한다.

나) 담당업무: 학외심사위원 선정

4. 심사기준 및 평정방법

가. 심사 배점기준

항목	전공적부 심사	연구(실기) 우수성 심사	교육 우수성 심사	면접 심사
기준	합/불	60점	40점	합/불

나. 기초심사 <서식 1>

- 1) 기초심사는 기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2) 기초심사위원회에서는 지원자의 법정자격, 학력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 3) 종합평정은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한다.

다. 전공심사

- 1) 전공 1단계 심사(연구(실기) 우수성 심사)

- 전공 1단계 심사는 전공심사위원회 I 에서 심사한다.
- 전공 1단계 심사 기준표 (연구(실기) 우수성 심사)

항목	배점	산출 방식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심사	10	<p style="text-align: center;">우수성</p> *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경력 채용분야는 지원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 심사
연구(실기)실적 양적 심사	20	<p style="text-align: center;">(총연구실적률×20)÷(최소자격 요건 2배수)</p> * 법조경력자의 경우 실무경력을 연구실적률로 대체
연구(실기)실적 질적 심사 (대표(연구)실적률)	30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연구)실적률 1편당 15점(주저자)</p> * 법조경력자의 경우 실무경력조서 1편을 질적심사(30점)
계	60	

가) 전공적부 심사 <서식 2>

- (1) 심사 대상 자료: 성적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최종 학위논문, 경력 증명서, 연구(실기)실적 등
- (2) 심사방법 및 절차
 - ① 전공적부 심사는 전공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심사위원 5명 중 2명 이상이 일치로 판정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 ② 전공적부 여부는 박사(또는 석사)과정의 성적표,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논문, 경력증명서, 연구(실기)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치, 불일치로 판정한다.

나)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심사 <서식 3, 3-1>

- (1) 심사 대상 자료: 응모자가 제출한 최종학위논문
- (2) 심사방법 및 절차
 - ① 최종학위논문의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 ② 5명의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점수로 한다.
 - ③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점수: 10, 9, 8, 7, 6 중에서 선택한다.
 - ④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경력 채용분야는 지원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⑤ 예능 분야: 최종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학위논문 대체 실적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평가한다.

다) 연구(실기)실적 양적 심사 <서식 4-1, 4-2, 4-3, 4-4, 4-5, 4-6>

(1) **심사 대상 자료:** 연구(실기)실적물, 연구(실기)실적 목록 및 증빙자료, 법조실무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방법 및 절차

- ① 학내심사위원회는 연구(실기)실적(법조경력) 등급과 참여인정률을 합의 하여 결정한다.

※ 예능분야: 실기실적물이 아닌 논문 등의 연구실적은 일반분야(인문·사회 계열)의 평정방법을 따름.

- ② 학내심사위원회가 결정한 연구(실기)실적물 등급 및 참여인정률이 응모자의 ‘연구실적 응모자 평가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연구처에서 확인·결정한다.

※ 학내심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외심사위원으로 대체하는 일반 채용 분야는 연구처에서 연구실적 등급 및 참여 인정률을 확인·결정하고, 예능 분야는 실기실적 등급 및 참여인정률을 전공 1단계 심사위원 3명이 합의 하여 결정함.

- ③ 학외심사위원의 연구(실기)실적 양적 평가는 분야일치와 중복여부 평가만 실시한다.

※ 연구(실기)실적(법조경력) 등급 및 참여 인정률은 학내심사위원회가 평가한 결과를 적용함.

- ④ 분야일치도: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0 중에서 선택한다.
- ⑤ 각 연구(실기)실적물(법조경력)의 채용분야 일치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다. 다만, 평균 점수가 0초과 0.4 이하일 경우는 0.4로 한다.

(3) 중복 연구(실기)실적물(심사 대상 기간)에 대한 조치

- ① 논문(실기)실적물의 중복성 여부는 전공 1단계 심사위원회가 심사서 중복여부란에 표기하되(예, 1번과 중복),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인정한 경우에만 중복으로 결정한다.

- ② 중복된 논문(실기)실적물은 1편만 인정하되, 대표연구(실기)실적물로 지정한 논문(실기)실적물, (참여)인정률이 높은 논문(실기실적물) 순으로 1편을 정한다.
- ③ 최종학위 논문의 내용과 학술논문의 내용이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중복실적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 ④ 중복 판정으로 대표연구(실기)실적물이 2편 미만이 될 경우 그 편수만을 대표연구(실기)실적물로 한다.
- ⑤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기)실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연구(실기)실적물과 중복될 경우에는 제출할 수 없다.
- ⑥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실무경력 분야의 중복된 실적(경력)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4) 연구(실기)실적물 채용분야 일치 여부 심사 판정에 대한 처리

연구(실기)실적 양적 심사에서 채용분야 일치 여부 심사 결과 심사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불일치 판정한 연구(실기)실적물은 연구(실기실적) 우수성 심사(연구실적 양적 심사서, 연구실적 질적 심사서)의 점수산정에서 제외한다.

- 연구실적률(%): 연구실적물(또는 법조경력) 등급 인정률(%) × 참여인정률 × 분야일치도
- ※ 연구실적률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올림하여 1자리까지로 함.
- 실기실적률(%): 실기실적물 인정률(%) × 분야일치도
- 응모자의 환산점수 = 연구(실기, 법조경력)실적률 합계 × 20 / 최소자격 요건 2배수
- ※ 환산점수가 20점을 초과하는 응모자의 환산점수는 20점으로 함.

라) 연구(실기)실적 질적 심사(대표연구(실기)실적물) <서식 5-1, 5-2>

(1) 심사 대상 자료: 응모자가 제출한 대표연구(실기)실적물 또는 법조실무경력 조서

- ※ 법조경력자는 실무경력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법조실무경력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심사방법 및 절차

- ① 대표연구(실기)실적물의 우수성 또는 법조실무경력에 대해서 평가한다.
- ② 연구(실기)실적물별(법조실무경력)로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값을 연구(실기)실적별 질적 심사 점수로 한다.

* 대표연구(실기)실적물 우수성 점수: 15점 ~7점 범위 내에서 선택

* 법조실무경력 우수성 점수: 30점 ~14점 범위 내에서 선택

- ③ 대표연구실적물을 2편 미만 제출하거나 중복논문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편당 배점은 15점으로 한다.
- ④ 연구(실기)실적 양적 심사에서 분야 일치 여부 심사 결과 심사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불일치 판정한 연구(실기)실적물은 대표연구(실기)실적물 및 점수 산정에서 제외되고, 이를 다른 연구(실기)실적물로 대체할 수 없다.
- ⑤ 응모자의 환산점수는 위 ②에서 구한 연구(실기)실적별 우수성 심사 점수 합계로 한다.

연구[실기]실적물 인정

1. 인문·사회계열

가. 연구실적 등급 및 인정률

구 분	등 급	인정률(%)
1. 학술논문	3대 과학저널(Nature, Science, Cell)	1000
	S급 국제전문 학술지(JCR 상위 5%)	450
	S급 국제전문 학술지(JCR 상위 10%)	400
	A급 국제전문 학술지(SCIE, SSCI, A&HCI)	300
	B급 국제전문 학술지(SCOPUS)	200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150
2. 특허	국제특허	200
	국내특허	120

나. 학술논문 참여 인정비율

구 분	주저자	공저자	비고
국제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100%* • 저자수 2인 $[(1/N) + 0.4] \times 100\%^*$ • 저자수 3인 이상 $[(1/N) + 0.5] \times 100\%^*$ 	$[(1/N) + 0.1]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은 총저자수 N=100 이상일 경우 N=100 처리
국제일반 및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 0.2] \times 100\%^*$ 	$(1/N) \times 100\%^*$	

※ 주저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로 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함.

※ *은 계열별 등급의 인정률임.

※ 연구실적률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올림하여 1자리까지로 함.

다. 특허(지식재산권): 참여인정률은 공동 저자수에 따른 인정률은 2인 공동 70%, 3인 공동 60%, 4인 이상 공동 50%를 인정하여 계산한다.

2. 자연계열

가. 연구실적 등급 및 인정률

구 분	등급	인정률(%)	
1. 학술논문	3대 과학저널(Nature, Science, Cell)	1000	
	S급 국제전문 학술지(JCR 상위 5%)	450	
	S급 국제전문 학술지(JCR 상위 10%)	400	
	A급 국제전문 학술지(SCIE, SSCI, A&HCI)	200	
	B급 국제전문 학술지(SCOPUS)	150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 학술대회발표논문	SJR Ranking Q1	200
		SJR Ranking Q2~Q4	150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100	
2. 특허	국제 특허	200	
	국내 특허	120	

※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 학술대회 논문: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하는 최신 목록에 있는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SCOPUS.COM 또는 webofscience.com에서 확인 가능한 논문만 인정

나. 학술논문 참여 인정비율

구 분	주저자	공저자	비고
국제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100%* • 저자수 2인 $[(1/N) + 0.4] \times 100\%^*$ • 저자수 3인 이상 $[(1/N) + 0.5] \times 100\%^*$ 	$[(1/N) + 0.2]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은 총저자수 N=100 이상일 경우 N=100 처리
국제일반 및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 0.3] \times 100\%^*$ 	$[(1/N) + 0.1] \times 100\%^*$	

※ 주저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로 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함.

※ *은 계열별 등급의 인정률임.

※ 연구실적률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올림하여 1자리까지로 함.

다. 특허(지식재산권): 참여인정률은 공동 저자수에 따른 인정률은 2인 공동 70%, 3인 공동 60%, 4인 이상 공동 50%를 인정하여 계산한다.

3. 의과대학 연구실적 최소자격 기준

- SCIE 등재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중에서 지원자가 해당되는 주저자의 수가 2인 이상일 때 ‘1/해당 주저자수’ 만 인정) 또는 IF 10 이상(논문 발표기준년도) 주저자 논문 1편 논문 실적이 있는 자. 다만, 증례보고는 1편만 인정한다.
- 예방의학, 법의학, 의학교육학의 경우 제출 논문 주제가 사회학인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주저자 논문도 인정한다.

4. 법조경력(실무경력) 등급 및 인정률(1개월 미만의 잔여일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판사, 검사의 경력 1년을 150%로 인정한다.
- 변호사의 경력 1년을 100%로 인정한다.
- ※ 법조실무경력 분야의 중복된 실적(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5-1. 공과대학 건축설계 및 건축계획 분야 설계창작활동

가. 실기실적 등급 및 인정률

실기실적물별	설계창작활동(실기실적) 등급	인정률 (%)
공모전	1. 세계건축가협회(UIA) 인증 국제설계경기 당선작 또는 1등	300
	2. 세계건축가협회(UIA) 인증 국제설계경기 그 외 입상작	210
	3. 기타 국제 설계경기 당선작 또는 1등	150
	4. 기타 국제 설계경기 그 외 입상작	105
	5. 전국규모 설계경기 당선작 또는 1등(공모전 참가 자격이 제한 없는 경우)	150
	6. 전국규모 설계경기 그 외 입상작(공모전 참가 자격이 제한 없는 경우)	105
	7. 지역규모 설계경기 당선작 또는 1등(공모전 참가 자격이 지역일 경우)	100
	8. 지역규모 설계경기 그 외 입상작(공모전 참가 자격이 지역일 경우)	70

- 공모전 입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도시 설계경기의 입상작에 한함.
 - ① UIA 인증 국제설계경기: 세계건축가협회(UIA)의 인증을 받은 국제설계경기
 - ② 기타 국제설계경기: 위 ①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설계경기
 - ③ 전국규모 설계경기: 국내에서 시행된 전국규모 설계경기
 - ④ 지역규모 설계경기: 위 ③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규모 설계경기
- ※ 학술논문 및 특허는 인문·사회계열을 따름.

나. 실기실적 참여 인정비율

구분	주저자	공저자	비고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 0.5] \times 100\%^*$ 	$[(1/N) + 0.1]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은 총저자수 N=15이상일 경우 N=15 처리
기타국제 및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 0.2] \times 100\%^*$ 	$(1/N) \times 100\%^*$	

*은 계열별 등급의 인정률임.

※ 주저자는 제1저자(First Author) 하나만 인정함.

※ 연구실적률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올림하여 1자리까지로 함.

5-2. 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설계창작활동

가. 실기실적 등급 및 인정률

※ 동일 작품은 1회만 평가

※ 전시·발표 실적은 지원자 제출 및 최종 인정률 150% 초과 불가

발표영역	국제	인정률 (%)	국내	인정률 (%)
A. 전문지발표	국제 저널게재	300	전국규모 저널게재	150
	기타 국제저널게재	150	기타규모 저널게재	70
B. 설계경기·수상	국제 건축상 당선작 또는 1등 수상작	300	국내 건축상 당선작 또는 1등 수상작	150
	국제 건축상 기타 입상작	210	국내 건축상 기타 입상작	105
	국제설계경기 당선작 또는 1등 수상작	300	전국규모 설계경기 당선작 또는 1등 수상작	150
	국제설계경기 기타 입상작	210	전국규모 설계경기 기타 입상작	105
	국내주최 국제설계경기 당선작 또는 1등 수상작	200	지역규모 설계경기 당선작 또는 1등 수상작	100
	국내주최 국제설계경기 기타 입상작	140	지역규모 설계경기 기타 입상작	70
C. 전시·발표	국제 규모(3개국이상참여)	100	전국규모	80
			지역규모	50
D. 계획·원공작품	국제 대규모	100	국내 대규모	80
	국제 소규모	70	국내 소규모	50

나. 실기실적 등급에 따른 인정범위 및 제출서류

구분	규모	세부 구분	인정범위	제출(증빙)서류
A. 전문지 발표	국제 규모	해외 해당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DESIGN nice, A+, JA, Architectural Record, Progressive Architecture, CASA BRUTUS, PROCESS:Architecture, SHINKENCHIKU, GA(Global Architecture), DETAIL, Archdaliy,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e's Journal, 신건축(일본), 건축문화(일본), PRAXIS, WA, THE PLAN, Domus, VMSPACE, SPACE(한국)	① 해당 전문지 제출 (출판연월, 전문지 제목, 목차, 페이지 범위, 저자명,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

구분	규모	세부 구분	인정범위	제출(증빙)서류
	기타 국제 규모	해외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상기 이외	
	국내 전국 규모	전국규모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A&C, PA, Poar, CONCEPT, 건축문화, 건축사, 건축가, 이상 건축, 건축세계, 플러스, 건축과환경, 건축설계, 건축과사회, 도시설계, 월간미술, 데코저널, 월간 인테리어, 전원속의 내집, Artnow, FRAME, 퍼블릭아트, 아트인 컬처, MARU, 인테리어 앤 데코	
	기타 규모	전문지에 각종 도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내용이 게재된 작품	상기 이외	
B. 설계경기·수상	국제 규모	국제적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작품	프리츠커건축상, 칼스버그건축상, 美 USITT건축상, AIA건축상, PA Award, AR+D Award	① 수상확인서 또는 상장 사본(국제설계공모나 국내설계공모를 1) 주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기관, 공인된 단체 또는 2) 공동서류 첨부된 설계사 대표 등이 발행) ② 공동설계확인 증명서(수상자가 건축설계 사무소 등의 대표명의로만 게재된 경우 해당 대표가 발행한 것)
		국제설계 경기의 입상	국외소재	
		국내주최 국제설계 경기의 입상	국내주관 UIA 인정 국제설계 경기	
	국내 전국 규모	국내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작품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한민국건축대전 건축상, 한국건축가협회상, 김수근 문화상 건축상	
		전국규모	광역시, 도, 공기업, 지방공사, 전국규모의 해당 단체에서 시행하는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지역규모	상기 이외의 국내 설계경기의 입상 작품	
C. 전시·발표	국제 규모	미발표작(1점)	3개국 이상 참여 또는 UIA 인정기관이 주관	① 증명서(해당 전시 규모 확인용) ② 증거물(발표 도록, 전시풍경 사진 중 하나) * 전시·발표 실적은 지원자 제출 및 최종 인정률 150% 초과 불가
	전국 규모	미발표작(1점)	학회, 협회 주관 공인 전시회(기획전, 초대전, 대한민국건축대전 초대작가전, 대한건축학회 교수설계 작품전 등)	
	지역 규모	미발표작(1점)	자자체 또는 공인기관 주관(기획전, 초대전 포함)	
D. 계획·완공작품	국제 규모	건축설계 인테리어, 환경조형물, 도시설계	대규모(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30㎡ 이상) 1건	① 계획도면, 디자인보고서 또는 패널 * 완공 건축물일 경우에는 완공 사진 추가 ② 건축사 3인(공동설계자 제외)의 우수건축 작품평가서(구체적 평가내용 명시) 각각 제출 ③ 공동설계자의 확인 증명서(지원자의 구체적 역할 명시)
	국내 규모		소규모(2층 이하 또는 연면적 330㎡ 미만) 1건	

※ 학술논문 및 특허는 인문·사회계열을 따름.

다. 실기실적 참여 인정비율

구분	저자	비고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0.5]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은 총저자수 N=15이상일 경우 N=15 처리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0.2] \times 100\%*$ 	

※ *은 계열별 등급의 인정률임.

※ 연구실적률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올림하여 1자리까지로 함.

6. 예능계열

가. 국악학과 실기실적 등급 및 인정률

구분	연구실적명				범위
	규모	발표회명/단체명	수상/참여	인정률(%) 국제 국내	
음반 및 작곡집	국제, 국내	음반명/작곡집명	단독	150	
			2인	100	
			3인	70	
			4인 이상	50	
연주 및 작곡발표	국제, 국내	연주회명/ 발표회명	단독	150	
			2인	100	
			3인	70	
			4인 이상	50	
협연 및 협주	국제, 국내	- 기악곡 전 악장 협연 (국악 기악전공) - 창극 주연 등 전악장 협연(국악성악전공)	협연/ 협주	120	
	국제, 국내	- 기악곡 부분 악장 협연 (국악 기악전공) - 창극 조연 등 부분 악장 협연(국악성악 전공)	협연/ 협주	70	
국악 관현악단 · 실내악단 및 창극연출	국제, 국내	프로그램명	연출/ 지휘	150	- 국악관현악단 · 실내악단 · 합 창단 전체 프로그램 - 지휘/창극 연출 (다만, 상임지휘 및 연출은 예외)
	국제, 국내	프로그램명	조연출/ 부분지휘	70	- 국악관현악단 · 실내악단 · 합 창단 부분 프로그램 - 지휘/창극 조연출
반주 및 중주	국제, 국내	프로그램명	반주/ 중주	70	전체 프로그램 반주 및 중주
	국제, 국내	프로그램명		50	2개 이상 프로그램 반주 및 중주
	국제, 국내	프로그램명		30	1개 프로그램 반주 및 중주

구분	연구실적명				범위	
	규모	발표회명/단체명	수상/참여	인정률(%)		
				국제		국내
국악 실내악 및 국악관현악 작곡	관현악/합창곡, 창극,	곡명	작곡	100		국악관현악곡 및 합창곡(다악장), 창극 작곡
	관현악/합창곡, 실내악곡	곡명	작곡	50		국악관현악곡 및 합창곡(단악장), 실내악곡 작곡
	독주곡, 독창곡	곡명	작곡	30		국악 독주곡 및 독창곡 작곡
학술상	국제 학회	학회명	수상	100		국제학회는 3개국 이상의 회원 으로 구성된 학회를 말한다.
	학술원/예술원	단체명	수상	100		
	국내 학회	학회명	수상	30		

※ 단독연주는 전체 프로그램을 연주하는 경우이며 2인 이상 연주는 전체 프로그램의 50% 이상, 3인 이상의 연주는 30% 이상, 4인 이상 연주는 30% 미만을 연주하는 경우임.

나. 음악학과, 음악교육과 실기실적 등급 및 인정률

구분	연구실적명	인정률%		비고
		국제	국내	
1. 단독 음악회	독주회, 독창회 및 단독 작곡 발표회	200		
2. 2인 이상 음악회	1) ① 협주곡 전 악장 협연 ② 창극 및 오페라 주연 ③ 관현악곡 및 협주곡 발표 ④ 2인 음악회(전체 프로그램의 50% 이상을 연주)	150		
	2) ① 협주곡 부분 협연 ② 합창곡 발표 ③ 창극 및 오페라 조연 ④ 3인 음악회(전체 프로그램 30% 이상을 연주)	100		
	3) 4인 이상 음악회(전체 프로그램의 25% 미만 연주)	기악	80	
		성악	50	
3. 실내악 연주회	1) 전체 프로그램 실내악 연주(2~8중주)	150		
	2) 부분 프로그램(50% 이상) 실내악 연주(2~8중주)	100		
	3) 부분 프로그램(50% 미만) 실내악 연주(2~8중주)	50		
4. 반주	1) 전체 프로그램 반주	100		
	2) 부분 프로그램(50% 이상) 반주	80		
	3) 부분 프로그램(50% 미만) 반주	40		
5. 작곡 및 편곡	1) ① 관현악곡, ② 국악관현악곡, ③ 실내관현악곡, ④ 오페라, ⑤ 창극, ⑥ 음악극 작곡	150		
	2) ① 실내악 편성 작품 ② 단편 합창곡 작곡 ③ 대규모 편성으로의 편곡 ④ 영화음악	100		
	3) ① 독주곡, 독창곡, 가곡 작곡 ② 실내악 편성으로의 편곡	80		

구분	연구실적명	인정률%		비고
		국제	국내	
6. 지휘	1) 교향곡 전 악장을 포함한 전체프로그램 지휘	200		
	2) 오페라, 오라토리오, 발레 전체프로그램 지휘	150		
	3) 협주곡 전체프로그램 지휘	100		
	4) 실내악 및 반주 전체프로그램 지휘	80		
7. 음반(CD, DVD등) 및 작곡집	1) 단독 음반 및 작곡집	200		* 음반은 리플렛(작품 해설, 작곡가 연주자 프로필 등 상세정보)이 탑재되어야 하며, 공현실황물일 경우 불인정(전문 레코딩과 마스터링을 거친 음원이어야 함) * 작곡집은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함
	2) 2인 음반 및 작곡집	150		
	3) 3인 이상 음반 및 작곡집	70		
	4) 4인 이상 음반 및 작곡집	50		

다. 미술학과, 디자인학과, 문화콘텐츠학부(멀티미디어전공), 문화전문대학원(미디어예술공학전공) 실기실적 등급 및 인정률

구분	실기실적 분류		등급	인정률(%)	개인전 인정여부 구분	비고
	규모	수상/참여				
개인전	국제, 국내	전시	A	150	○	
			B	100	○	
공모전	국제전	특선 이상	-	70	×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자격으로 초대 출품한 경우 포함
	국내전	특선 이상	-	50	×	
국제전	외국에서 주최 기획된 전시	전시	A	70	×	
			B	50	×	
초대전, 단체전	국내 주최 국제, 국내전	전시	A	50	×	
			B	30	×	
기획전	큐레이터에 의해 기획된 국제, 국내전	전시	A	50	×	
			B	30	×	
미술상	국제	수상	·	70	×	
	국내		·	50	×	

※ 미술학과 지원자는 B등급으로 시스템에 입력하되, 인정률 A, B 등급은 전람회의 규모, 비중,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 협의에 따라 결정함.

※ 국제전이라 함은 3개국 이상의 작가가 참가한 전람회를 의미함.

2) 전공 2단계 심사(교육 우수성 심사)

- 전공 2단계 심사는 전공심사위원회Ⅱ에서 심사한다.
- 전공 2단계 심사 기준표(교육 우수성 심사)

항목	공개수업 심사	교육·연구개발역량 심사	계
배점	20점	20점	40점

가) 심사 방법 및 절차(공통사항)

- (1) 전공 2단계 심사는 고지된 시간에 고지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 (2) 공개수업 주제는 해당 채용분야 학과(부) 등의 수업과목 내용 중에서 선정한 공동 주제로 한다.
- (3) 교육·연구개발역량 발표 주제는 채용분야의 주제로 응모자가 제안하며, 전공교육과 연구의 선순환 계획으로 ①전공 교육 및 연구 동향, ② 중·단기 교육 및 연구계획을 포함한다.
- (4) 공개수업과 교육·연구개발역량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개인별로 심사하며, 지정 기간 내에 심사하지 않은 심사위원은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 (5) 공개수업 점수와 교육·연구개발역량 점수는 심사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각각 산출한다.
- (6) 외국체류자의 공개수업 및 교육·연구개발역량 심사를 화상으로 실시할지 여부는 학과(부) 등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상강의 및 화상세미나 실시 여부와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7) 전공 2단계 대상자가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불참 시 결격 처리한다.

나) 공개수업 심사 <서식 6>

- (1) 공개수업은 전공심사위원회Ⅱ 위원과 해당학과(부) 전임교원이 심사한다.
- (2) 공개수업은 영어(외국어·외국문학 분야는 해당 언어)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부), 초빙분야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3) 수업구성의 완성도(5점), 교과내용 이해력(5점), 수업방법의 적절성(5점), 수강생에 대한 이해력(5점) 등을 평가하며, 합산한 점수의 최저점을 7점으로 하고 1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공개수업에 참석한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심사하여 항목별(총점 20점)로 평가한다.

다) 교육·연구개발역량(또는 실기) 심사 <서식 7>

- (1) 교육·연구개발역량은 전공심사위원회Ⅱ에서 심사한다.
- (2) 교육·연구개발역량은 영어(외국어·외국문학 분야는 해당 언어)로 발표할 수 있으며, 영어 발표여부는 해당분야의 학과(부)에서 결정한다.
- (3) 전공 교육 및 연구 동향 이해력(7점), 중·단기 교육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7점), 발표력(6점) 등을 평가하며, 합산한 점수의 최저점을 7점으로 하고 1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4) 교육·연구개발역량은 공개로 실시하고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심사하여 항목별(총점 20점)로 평가한다.
- (5) 교육·연구개발역량 대신 전공실기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기능력을 평가한다.
- (6) 전공실기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개발역량에 상응하는 평가항목과 배점을 규정한 실기 심사서를 해당 학과(부) 등의 교수회의에서 정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면접심사 <서식 8>

면접심사는 교육자로서의 인성, 품성, 학생지도 능력과 리더십, 연구자로서 자질과 잠재력 및 본교 임용 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면접심사 참고자료

응모원서, 각 학위과정 성적표, 교육계획서, 연구계획서, 자기소개서, 인성검사자료

2) 면접심사 평가방법

- 가) 면접심사는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나) 면접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심사하여 항목별(총점 20점)로 평가한다.
- 다) 면접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점수 합계가 15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하고, 14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면접심사는 대상자가 출석하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면접 대상자의 외국체류,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심사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5. 합격자 사정

가. 기초심사 사정

- 1) 응모 서류를 심사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공 1단계 심사를 실시한다.
- 2) 기초심사 합격인원이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인 경우에만 전공 1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합격인원이 2배수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1단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부) 등이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전공심사 사정

1) **평점의 기록:** 합격자 사정에 있어서 평점의 산출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3자리 이하 절사)로 한다.

2) 전공 1단계 심사(연구 우수성 심사)

가) 기초심사 합격자에 대해 전공 1단계 심사(연구 우수성 심사)를 실시한다.

나) 전공 1단계 심사는 심사위원 4명 이상이 참여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 채용분야의 최소자격 요건의 국제규모 실적률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국제규모 실적률을 국내규모 실적률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전공 1단계 심사 합격인원이 채용인원의 2배수 이상인 경우에만 전공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합격인원이 2배수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부) 등이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합격자 사정 기준

(1) 전공적부 심사: 심사위원 5명 중 2명 이상이 일치로 판정한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2) 최소자격 심사: 연구(실기)실적의 양적 심사 결과 산출된 연구(실기) 실적률이 최소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3) 전공 1단계 심사 합계 점수가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한다.

(4) 전공 1단계 심사 점수 상위 순위를 기준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까지를 전공 1단계 합격자로 할 수 있다. 다만, 3순위 자가 동점자인 경우에는 동점자까지 합격자로 한다.

※ 기초심사 전에 지원인원을 고려하여 총장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3배수를 초과하여 5배수까지를 전공 1단계 합격자(마지막 순위 자가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까지)로 할 수 있다.

3) 전공 2단계 심사(교육 우수성 심사)

가) 전공 1단계 심사 합격자에 대해 전공 2단계 심사(교육 우수성 심사)를 실시한다.

나) 전공 2단계 심사는 심사위원 5명 이상이 참여하여 심사하되, 심사는 개별적으로 한다.

다) 합격자 사정 기준: 전공 2단계 심사 합계 점수가 2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4) 전공심사 합격자

가) 전공 2단계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공심사 합격자 사정을 한다.

나) 합격자 사정 기준

(1) 전공 1단계 심사 점수와 전공 2단계 심사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상위 1순위 자를 면접대상자로 한다. 다만, 면접대상자(1순위자)가 면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과(부) 등에서 차순위자를 면접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전공 1단계 심사 점수와 전공 2단계 심사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3) 1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① 연구(실기)실적 질적 심사 ②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심사 ③ 장애인 ④ 연구(실기) 실적 양적 심사 ⑤ 공개수업 심사 ⑥ 교육·연구개발역량 심사 ⑦ 채용 학과(부) 내 소수 성별

다. 최종합격자 사정

- 1) 전공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심사에서 합격자가 없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 학과(부) 등이 전공심사 차순위자에 대하여 추가 면접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학과(부) 등의 신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면접 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최종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2) 면접심사 사정 기준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6. 공개채용 심사 결과의 공개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채용 심사결과를 응모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채용분야 심사과정까지 합산된 응모자의 심사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자 및 심사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제3호제다목에 따라 개인별 심사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7. 심사 및 채용의 제한

가.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및 불공정 행위

- 1) 전공 1, 2단계 전공심사위원은 교원공채 심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심사한다.
- 2) 심사위원은 교원공채 심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심사단계별로 심사결과를 입력하고 저장 후 반드시 최종 확정해야 한다.
- 3) 전공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심사서 제출 시 심사의 공정성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의견서(서식9)를 제출한다.

※ 의견서 제출: 심사당일 또는 익일까지 대학(원)공채관리위원장에게 제출

4) 공채 관련 불공정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공채 관련의 금품 수수 또는 유사한 행위

나)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을 위한 심사 부탁

다) 기타 공채공정관리위원회 또는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판정한 행위

나. 심사절차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응모자, 학과(부) 등의 심사위원 및 전임교원은 전공심사 절차 및 결과에 대하여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 이후 10일 이내에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는 위 1)의 이의 신청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3) 대학(원)공채관리위원장은 이의 신청에 대한 조정이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이나 조치를 신청한다.

4) 전공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총장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5) 이의 신청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이의 신청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6) 부당한 또는 부적절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채공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불공정 판정과 채용의 제한

공채공정관리위원회 또는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에서 불공정하다고 판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전임교원 임용 전: 당해 심사분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재심사를 요구하며, 이 경우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2) 전임교원 임용 후: 임용된 자가 심사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한다.
- 3) 불공정 관련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재: 위 1), 2)에서 불공정 판정을 받은 경우 불공정 행위에 관련된 심사위원은 불공정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차기 3회에 걸쳐 전임교원 공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총장은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8. 기타 사항

-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나.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부)장이 학과(부) 교수회의를 거쳐 ‘학과(부) 심사 기준 및 평정방법’ 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공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확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연구(실기)실적물의 중복 및 기타의 사유로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서식 1>

기 초 심 사 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항목	요건	평정 (합·불)	사유 (불합격시 사유기재)	비고
임용자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자격	박사학위 소지자			
	전문의 자격소지자<의대 임상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수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치전원 임상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예능계 실기분야(문전원 실무분야 포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약무박사(Pharm. D.) 자격을 소지한 자<약대 임상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5년 이상인 자<법학전문대학원 실무경력(실무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공과대학·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분야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만,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는 산업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산학협력중점교원)			
최소자격요건에 명시된 채용분야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종합평정 (해당란에 “○” 표하고 날인)	합격() / 불합격()			
	<심사위원 합의결과의 내용>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2>

전공적부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심사 자료	박사(또는 석사)과정의 성적표 학위취득증명서 최종학위논문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		
전공 적부 여부 평정	일치() / 불일치()		
불일치 사유			

-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 전공적부심사는 박사(또는 석사)과정의 성적표, 학위취득증명서, 최종학위논문, 경력 증명서,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치”, “불일치”로 판정
- ※ 불일치 판정 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3>

최종학위논문 우수성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최종학위논문명	
우수성 평가점수 (10점)	()점

-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 우수성 점수 부여기준: 10, 9, 8, 7, 6 중에서 선택
- ※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 채용분야는 지원 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을 심사하여 점수 부여: 10, 9, 8, 7, 6 중에서 선택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3-1>

최종학위 우수성 심사서 (예능분야)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최종학위	
우수성 평가점수 (10점)	()점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우수성 점수 부여기준: 10, 9, 8, 7, 6 중에서 선택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44>

연구실적 분야일치 및 중복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연구실적물별	연구실적 번호 <small>(교무처에서 부여한 번호)</small>	분야일치도	중복여부	비고
학술논문				
특허				

-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또는 칸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분야일치도: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중에서 선택함.
- ※ 중복여부: 연구실적물 중 중복되는 경우만 기재함.(작성예시: 1번과 4번이 중복된 경우 1번 란에 “4번과 중복”, 4번 란에 “1번과 중복” 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45>

법조경력 분야일치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법조 경력 기간	법조 실적 번호 (교무처에서 부여한 번호)	근무처	등급	분야일치도	비 고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분야일치도: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중에서 선택함.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46>

실기실적 분야일치 및 중복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실기실적 번호 (교무처에서 부여한 번호)	분야일치도	중복여부	비고

-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또는 칸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 분야일치도: 1.0,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중에서 선택함.
- ※ 중복여부: 연구실적물 중 중복되는 경우만 기재함.(작성예시: 1번과 4번이 중복된 경우 1번 란에 “4번과 중복”, 4번 란에 “1번과 중복” 으로 표기)

상기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5-1>

연구실적 질적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연구실적물별	연구실적 번호 <small>(교무처에서 부여한 번호)</small>	우수성 평가점수 <small>(15점)</small>	비고
학술논문			
특허			

-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 우수성 점수 부여기준: 15점 ~ 7점 범위 내에서 선택함.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5-2>

법조실무경력 실적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심사 대상자료	우수성 평가점수 (30점)	비 고	
법조실무경력 조 서			

- ※ 심사 대상자료: 응모자가 제출한 법조실무경력 조서
- ※ 심사위원은 응모자가 제출한 법조실무경력 조서를 토대로 우수성 점수 부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함.
-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 우수성 점수 부여기준: 30점 ~ 14점 범위 내에서 선택함.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5-3>

실기실적 질적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실기실적 번호 (교무처에서 부여한 번호)	우수성 평가점수 (15점)	비고

-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 우수성 점수 부여기준: 15점 ~ 7점 범위 내에서 선택함.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6>

공개수업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고 (평가의견)
수업구성의 완성도 (5)		
교과내용 이해력 (5)		
수업방법의 적절성 (5)		
수강생에 대한 이해력 (5)		
합계(20)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합계의 최저점을 7점으로 하고, 1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서식 7>

교육·연구개발역량 심사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심사위원	(인)

평가항목	평가점수	비고 (평가의견)
전공 교육 및 연구 동향 이해력 (7)		
중·단기 교육 및 연구 계획의 우수성 (7)		
발표력 (6)		
합계(20)		

※ 심사는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함.

※ 합계의 최저점을 7점으로 하고, 1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년 월 일

전남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서식 1)

학위논문 목록

성명:

응모분야:

학 위 (석사·박사)	취득년월	제목	논문 지도교수 (대학명)

(별첨 서식 3-1)

국제전문 연구실적 목록

성명:

응모분야:

일련 번호	저자명	연구실적물 제목	학술지명 또는 제출처명	게재권(호)수 또는 등록번호	게재면	발표 연·월·일

[작성요령]

1. 최근에 발표한 것부터 일련번호를 쓰고 학술논문, 특히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저자명은 연구실적물 원본 그대로 모두 기재하되, 저자의 출신국가가 대한민국인 경우 저자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한다.
3. 대표실적물은 일련번호 앞에 “대표” 라고 표기한다.
4. 학위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5. 발표연도는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발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월까지 기재)한다.

(별첨 서식 3-2)

국내전문 연구실적 목록

성명:

응모분야:

일련 번호	저자명	연구실적물 제목	학술지명 또는 제출처명	게재권(호)수 또는 등록번호	게재면	발표 연·월·일

[작성요령]

1. 최근에 발표한 것부터 일련번호를 쓰고 학술논문, 특히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저자명은 연구실적물 원본 그대로 모두 기재하되, 저자의 출신국가가 대한민국인 경우 저자 성명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한다.
3. 대표실적물은 일련번호 앞에 “대표” 라고 표기한다.
4. 학위논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5. 발표연도는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발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월까지 기재)한다.

(별첨 서식 3-3)

실기실적 목록

성명:

응모분야:

일련 번호	구분	실적물 제목	규모	전시회명·단체명	발표 연·월·일

[작성요령]

1. 구분: 전형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전, 공모전, 국제전 등을 기재한다.
2. 규모: 국제, 국내로 기재한다.
3. 대표실적물은 일련번호 앞에 “대표” 라고 표기한다.
4. 발표연도는 월·일까지 정확히 기재(발표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월까지 기재)한다.

(별첨 서식 4)

연구실적 응모자 평가표

성명:

응모분야:

구분	일련번호	연구실적물 제목	연구실적물			연구실적물 [③=①*②* 일치도]
			등급	인정률(%)	참여인정률	
학술논문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A급 국제	300	$[(1/2)+0.4]$ [논문 저자가 2명이고, 응모자가 주저자인 경우]	
		”	B급 국제	200	$[(1/3)+0.1]$ [논문 저자가 3명이고, 응모자가 공동저자인 경우]	
		”	한국연구 재단등재 (후보)지	150	$[(1/8)+0.2]$ [논문 저자가 8명이고, 응모자가 주저자인 경우]	
		“자연계열의 경우”	S급 국제	400	$[(1/3)+0.5]$ [논문 저자가 3명이고, 응모자가 주저자인 경우]	
특허						

[작성요령]

1. “일련번호” 는 국제규모 연구실적 목록과 전국규모 연구실적 목록에 기재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연구실적물 “등급, 인정률(%), 참여인정률” 은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지침의 심사기준 및 평정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실기실적물은 제외>
3. 연구실적률은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올림하여 1자리까지로 한다.

(별첨 서식 5)

법조실무경력 조서

채용분야		소속예정 대학 및 학과(부)	
응모자 성명			

※ 작성요령: 지원자의 법조실무 경력 중 대표적인 수행사건 및 이에 대한 본인의 법적 견해를 원고지 분량 120매 이내에서 자유롭게 기술하십시오.

<과제명> :

(별첨 서식 6)

법조실무경력 지원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

성명:

응모분야:

연번	관할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 심판 등 종결일	사건내용 요약	참고사항

※ 작성요령: 지원분야와 관련되어 수행하거나 처리한 사건 주요 목록 기재(별지 사용 가)